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8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2

Ⅰ. 개요

1.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8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5년간 50%	○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2025. 12. 31.	○ 적용기한 ① 농공단지: 2027. 12. 31.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이만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김형동의원안) 2030. 12. 31. (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원안)

현 행	개정안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5. 12. 31.	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7. 12. 31.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이만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김형동의원안) 2030. 12. 31. (강명구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만희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3),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김형동의원안 2025. 7. 3. 발의(의안번호 11236), 윤영석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7),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강명구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5), 서영교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54)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하고[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산업의 낙후·쇠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판매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의미함[2].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농공단지 수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총 고용인원
2017년	468	7,162	6,410	150,042
2018년	472	7,321	6,549	149,128
2019년	472	7,486	6,730	152,612
2020년	472	7,679	6,924	153,253
2021년	476	7,892	7,173	154,450
2022년	476	8,100	7,429	154,125
2023년	481	8,286	7,535	152,012
2024년	484	8,369	7,674	153,3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연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현황]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하남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진곡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평동1,2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평동3차 일반산단	2023.11.21.~2025.11.20.	신규 지정	제2023-531호
주포제2농공단지	2023.12.30.~2025.12.29.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4-6호
동화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삼계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동화전자 종합농공단지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2024.07.22.~2026.07.21.	신규 지정	제2024-419호
금사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1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2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철강3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포항4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2호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나주혁신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강진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기간	비 고	중기부공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세풍일반 산업단지(1단계)	2025.01.26.~2027.01.25.	지정기간 연장 (1회에 한함)	제2025-101호

주: 음영표시된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조세지원 지역(인구 20만 미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하에 1986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음.

동 조세특례는 신설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없었으나, 1998년 세법개정 시 2000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도래 예정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3	11	5	4	2	0.1	0.1
법인세	30	39	49	46	98	96	98
합계	44	50	54	50	100	96	9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농공단지의 69.7%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며 지원 인프라 부족 등 경쟁력의 지속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85년 이전	86~90년	91~95년	96~00년	01~05년	0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후	합계
개수	8	209	58	19	43	84	46	7	10	484
비율	1.7	43.2	12.0	3.9	8.9	17.4	9.5	1.4	2.1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의 운영을 통해 2024년 평균 분양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하고, 입주기업 수도 12.9%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이 50.2%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또는 증감률) '23년 대비 '24
분양률	88.5	89.7	1.2
입주기업 수	792	894	12.9
생산액	23,968	35,996	50.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둘째,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고용되는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 수준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어가소득 역시 65%~82% 수준에 불과함.

[농・어가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6%	60,033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1
2019년	41,182	59.3%	48,415	69.7%	69,432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0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5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4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3

주1: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말함
주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4개 분기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기재함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외에도 각종 혜택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주 검상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영천 도남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친환경 인프라를 설치하였고, 군산 서수농공단지, 김제 서흥농공단지,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였음.

또한, 여러 부처에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2,180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등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둘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사업이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앞서 나열한 재정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 바 세제지원 외에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긴급경영안정자금·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지원 시 평가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가 적용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

구 분	세부내용
판로지원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자금지원	특별지원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 시 우대지원
기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지원 한도 확대, 분양조건 완화 등 추가지원

자료: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20. 8. 17.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